

# 검 토 보 고

##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.

### ☐ 제안이유

-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광역시·도내에 소요조회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하지 않고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의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☐ 주요골자

-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광역시·도내(시·군·자치구포함) 소요조회를 할 경우 현행,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.(안 제17조)

### ☐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에 의하면 불용품이 발생될 경우 불용 결정전에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정부 각부처와 각 시·도 및 경기도내 각 시·군에, 1천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도내 각 시·군에 소요 조회토록 되어 있으나

- 1천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활용가치가 적은데 비해 소요조회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자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취득가격 5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
-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